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안)

2017. 11. 24.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기본 방향(안)
2. 1단계 배출권 할당 세부 방안(안)
3. 2단계 배출권 할당 방향(안)
4. 배출권 과다 이월에 대한 불이익 부여('17.4.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적용 방안(안)



1.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기본 방향(안)



기본 방향

단계별 배출권 할당 추진

1단계 배출권 할당('17.12월)

- 제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조기감축실적 제외) 수준으로 '18년도분 배출권 우선 할당
 - ☞ '18년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 및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

2단계 배출권 할당('18.상반기)

-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확정 할당
 -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과의 정합성 유지



2. 1단계 배출권 할당 세부 방안(안)



1단계 세부 방안(안) : '18년도분 배출권 할당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 수준으로 '18년도분 배출권 우선 할당

'18년도분 할당량 결정 방식

- 기업별 '14~'16년 인정량 X 할당 비율

할당 비율 산정 방식

- '18년도분 할당량이 제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조기감축실적 제외) 수준이 되도록 할당 비율 산정

$$\text{할당 비율} = \frac{\text{제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sum \text{'14~'16년 인정량}}$$

 -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총량 : '15~'17년 평균 사전할당량('17년 변경분 포함) - '15~'16년 평균 할당취소량 + '15~'16년 평균 추가할당량
 - ✓ 할당 비율은 인정량에 영향을 받으므로 할당 신청 완료(12.1일)후 인정량 확정 과정에서 할당 비율도 일부 변경 가능

'18년도분 할당량(안)

업종	인정량(추정)	'14~'16 평균 배출량(추정)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	18년도분 할당량(할당비율)
전 업종	63,100만톤	57,617만톤	53,846만톤	53,846만톤(85.3%±α)

- ✓ '14~'16년 평균 배출량 대비 '18년도분 할당량 비율은 93.5%



1단계 세부 방안(안) : 기타 요소

'18년도분 할당량 외 요소는 2단계 확정 할당 과정에서 결정

정부 예비분

-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제1차 할당계획 수준으로 적립 (약 1,400만톤)
- 기타 용도 예비분은 1단계 우선 할당 과정에서는 미포함, 2단계 확정 할당 과정에서 포함

'19~'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

- '19~'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은 1단계 우선 할당 과정에서는 미정, 2단계 확정 할당 과정에서 결정

유상할당 및 BM 할당방식

- 유상할당 및 BM 할당방식은 1단계 우선 할당 과정에서는 미정, 2단계 확정 할당 과정에서 결정
 - ✓ 유상할당은 2단계 확정 할당 과정에서 '18~'20년 3개년도분 전체에 대한 유상할당량(각 년도분 할당량의 3%)을 산정
 - ✓ 유상할당량에 대한 경매는 '19년부터 실시



1단계 세부 방안(안) : 2단계 확정 할당 후 할당량 조정

2단계 확정 할당 후에도 1단계에서 할당한 '18년도분 할당량은 보장

2단계 확정 할당시 '18년도분 할당량 > 1단계 우선 할당시 '18년도분 할당량인 경우

- 증가분을 '18년도분 할당량으로 추가 할당

	2018년	2019년	2020년
1단계 할당량	1,000	-	-
2단계 할당량	1,200	1,200	1,200
최종 할당량	1,200(1,000+200)	1,200	1,200

2단계 확정 할당시 '18년도분 할당량 < 1단계 우선 할당시 '18년도분 할당량인 경우

- '18년도분 할당량은 1단계 할당량으로 유지
- 감소분을 '19~'20년도분 할당량에서 조정

	2018년	2019년	2020년
1단계 할당량	1,000	-	-
2단계 할당량	800	800	800
최종 할당량	1,000	700(800-100)	700(800-100)



1단계 세부 방안(안) : 향후 일정(잠정)

법정 절차를 거쳐 12.4주중 1단계 할당계획 확정 / 12.5주중 1단계 할당량 통보

1단계 할당계획 수립

- 할당위원회 심의 의결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의결 → 국무회의 심의 의결 (1단계 할당계획 확정)

1단계 할당량 통보

-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할당량 통보

기업 준비 관련 절차

-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 : 완료
- 할당신청 : 11.16.~12.1. (1단계 할당계획 수립 절차와 병행 실시중)
 - ✓ 배출권 할당이 필요한 모든 시설을 빠짐 없이 신청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되,
 - ✓ 기한 내 증빙 자료 제출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간을 통해 보완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모니터링(MP) 계획

- 기존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 시설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기존 모니터링 계획 활용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출)
- 신규 할당대상업체는 '17.12~'18.1월(2개월)중 모니터링 계획 제출



3. 2단계 배출권 할당 방향(안)



2단계 방향 :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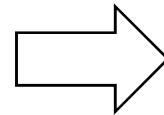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확정 할당

기본 방향

-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18~'20년도분 배출권 확정
- 유상할당, BM 할당방식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센티브 등도 적용

고려해야 할 환경·에너지 분야 국정과제 등

- '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미세먼지 종합대책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일정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병행하여 '18.상반기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유상할당 및 BM 할당방식 대상 업종은 '18년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조기 확정 추진



2단계 방향 : 세부 사항 (11.17. 업종별 협회 관계자 간담회 결과)

유상할당 및 BM 할당방식 확대 적용 등에 대해서는 '18년초부터 논의 시작

유상할당 적용

- 1단계 할당 완료 직후인 '18년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조기 확정 추진
- 유상할당 대상 업종 선정과 관련한 업종 구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세분화 하는 방향 검토
 - ✓ 현행 할당계획 상 업종 구분인 26개 업종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더 세분화 할 필요

BM 할당방식 확대 적용

- 1단계 할당 완료 직후인 '18년초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조기 확정 추진
- 기 마련한 BM 할당방식 적용 대상 업종별 BM 가이드라인(7개 업종 예상)을 기초로 논의 추진



2단계 방향 : 세부 사항 (11.17. 업종별 협회 관계자 간담회 결과)

업종별 배출허용총량(CAP)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폐지 의견

- 제1차 할당계획과 유사하게 업종간 조정계수 차이가 커서는 곤란
- 동일 업종 내에서도 감축잠재량, 성장세 등 측면에서 업체간 여건이 상이하므로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필요성 낮음
- EU 사례와 같이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폐지하고, 업종 특성은 BM 할당방식 확대 등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유지 의견

- 감축잠재량, 성장세 등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또는 보완 수단)는 필요

향후 검토 방향

- 업종별 배출허용총량(CAP) 설정 여부에 대해 산업계 의견 지속 수렴
 - ✓ 1단계 우선 할당 과정에서 단일 할당 비율을 설정한 것은 2단계 확정 할당 과정의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여부와 무관



4. 배출권 과다 이월에 대한 불이익 부여('17.4. 시장안정화 방안) 적용 방안(안)



적용 방안(안)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 초과 이월시 초과분 만큼 할당량에서 차감

근거

-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거래를 통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할당량 결정(시행령 12조 1항)

적용 기준

-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 + 2만톤”을 초과하여 제2차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경우 불이익 적용

불이익 수준

-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 배출권 중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량 만큼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
 - ✓ 예)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 경우 : 8만톤 차감

적용 시점 및 방식

- 불이익 수준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이의신청 과정 포함)되는 '18.8월말 시점에 확정
- 확정된 불이익은 '19~'20년도분 배출권에서 차감하되, 2단계 확정 할당에 따른 '19~'20년도분 배출권 조정과 동시에 실시



원칙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배출권이 과다 이월 판단 대상에 포함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 산정 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할당 배출권(KAU)이 해당** : 사전할당 + 추가할당 + 조기감축실적 + 권리의무 승계 - 할당취소
- 매수·매도한 배출권 미반영 (배출권을 매수하더라도 연평균 할당량을 확대 산정하지 않음)
- 상쇄 배출권(KCU),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할당 배출권(KAU)이 아니므로 미반영

과다 이월의 판단 대상이 되는 배출권 산정 범위

- **원칙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배출권이 해당**
- 사전할당 + 추가할당 + 조기감축실적 + 권리의무 승계 - 할당취소 등 할당 배출권(KAU) 반영
- 매수·매도한 배출권 반영 (배출권을 매도할 경우 과다 이월 판단 대상이 되는 보유 배출권 감소)
- 상쇄 배출권(KCU) 반영 (상쇄 배출권을 보유하는 경우 과다 이월 판단 대상이 되는 보유 배출권 증가)
-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은 배출권이 아니므로 미반영